

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1. 개정이유

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25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·심사 평가제의 평가 항목 중 어장환경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가 취할 수 있는 어장환경개선조치 방법을 확대하여 어장의 환경개선 효과를 높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어장환경개선조치 방법 추가(안 제22조제4항)

어장환경평가를 미달한 자가 취할 수 있는 어장환경개선조치 방법에 해양의 자연 정화를 위한 어장휴식 추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해양수산부령 제 호

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어장휴식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면허의 심사·평가 방법 및 절차 등) ① ~ ③ (생 략)	제22조(면허의 심사·평가 방법 및 절차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허의 심사·평가 항목에 미달 한 양식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어장환경개선조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4. 어장휴식</u>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